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359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5. 10. 20.
4. 회부일자 : 2025. 10. 23.

II. 제안이유

- ‘늘봄학교’ 사업을 위한 2026년 총액인건비 보강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III. 주요내용

1.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12명 (7,927명 → 8,039명)
 - 교육전문직원 : 증 112명 (761명 → 873명)
2.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112명 (7,927명 → 8,039명)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12명 (761명 → 873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증 112명 (710명 → 822명)

3. 참고사항

1. 입법예고(2025. 10. 13. ~ 2025. 10. 15.): 의견 없음
 - 단축사유: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41조1항 단서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협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4. 첨부자료
 -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별첨 1】
 -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 3) 비용추계서: 【별첨 3】
 - 4)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 5)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통보 확인서 【별첨 5】
 - 6)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별첨 6】
 - 7) 관계법규: 【별첨 7】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59호로 제출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늘봄학교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육부가 2026년도 늘봄지원실장²⁾ 인력을 증원하고자 서울시교육청에 2026년도에 ‘임기제 연구사’ 112명의 인건비 증액³⁾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⁴⁾ 및 「지방교육

1)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로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개선한 것임.

2) 늘봄지원실장은 개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하는 등 기존 교감 및 방과후(돌봄) 부장이 맡고 있던 늘봄학교 관련 업무의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교사 중에서 2년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 근무하고 임기 종료 후 기존 교원 직책으로 복귀하게 되는 구조임.

3)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2024.7.18.).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초등) 전담체제 구축 관련 안내..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2025.1.). 2025년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행정직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2025.10.). 2026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육부는 2024년에 늘봄지원실장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및 2026년 2개년에 걸쳐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확정함.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도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에 서울시 교육전문직원 인력을 154명 증가하여 예산을 편성·통보하였고, 2026년도에는 112명 증가하여 서울시에는 총 266명의 늘봄학교 관련 전문직 인력 예산을 최종 편성·통보하였음.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⁵⁾에 따르면 교육행정기관 정원 관리는 교육감이 조례⁶⁾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2조의 정원 총수 및 교육전문직원의 수를 개정하고,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등을 증원하는 것인바, 법률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늘봄지원실장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총 154명을 선발 하기로 하였으나 지원 저조로 43명이 선발되지 못하였고, 이에 2026년도에 미선발 인원 43명을 포함하여 늘봄지원실장을 선발 하였으나 금번에도 총 17명이 최종 선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해 현재 교육부는 미배치 인력 인건비에 대해 이월이 가능하다는 의견이긴 하나⁷⁾, 금번 미선발된 17명 늘봄지원실장 채용 가능성 및 채용 시기 등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2025.10.). 2026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늘봄지원실장 선발 공고를 2025년 10월 28일에 게시하고 2025년 11월 17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11월 22일에 면접 평가를 시행하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 심의 (2025년 12월 18일) 이전에 모든 채용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 이와 같은 채용 절차는 전년도 ‘2025년 늘봄지원실장 선발’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하여 의회 심의 당시 지적이 있었습니다⁸⁾.
-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의 자격이 현직 ‘초등교사’ 이므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선발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60조제1항⁹⁾에 따라 ‘시험’ 방식에 의한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은 이후 매년 3월 1일자로 이뤄지는 교사 정기 전보 등과 긴밀히 연결되기에 12월 의회 의결 이후 채용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¹⁰⁾.

- 그러나 교육부는 작년 2025년 늘봄실장선발 당시에는 늘봄지원실장

8)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2024.11.28.), 7페이지.

9) 「교육공무원법」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제12조제1항제4호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생략)

② (생략)

10)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2024.10.4.). 임기제 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 선발 관련 교육전문위원회 설명자료 및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2024.9.12.). 늘봄지원실장 선발 배치 운영 세부 방안.

배정 인원을 2024년 7월에 교육청에 통보하였고¹¹⁾, 금번 2026년 늘봄실장선발 인원 관련 해서는 2025년 3월에 이미 확정 공문을 발송하였는바¹²⁾, 2026년 채용은 의회 심의 이후 늘봄지원실장 채용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 특히 늘봄지원실장 선발은 2024년에 이미 2개년에 걸쳐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연말에 이르러서 의회 심의 이전 급박하게 채용 절차를 거친 것은 「지방자치법」¹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조례 제·개정권을 상습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인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관행적이고 안이한 정원관리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가영(2180-8270)
----------	----------------	-------	----------------

11)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2024.7.18.).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초등) 전담체제 구축 관련 안내.

12)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2025.3.18.). 2026년 늘봄지원실장 선발 정원 배정 안내.

13)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략

② 생략